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43407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19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진득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24. 6. 26. 강제경매개시결정		배당요구종기	2024. 9. 20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정세진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0.07.31.	348,000,000		2020.07.31.	2020.07.13.		
정한나	602호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4.05.30			
주택도 시보증 공사 (임차인 정세진)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권 자	2020.07.31.~ 2023.01.30.	348,000,000		2020.07.31.	2020.07.13.	2025.8.11.	
<p><비고></p> <p>정세진: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2. 8. 26.임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, 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에 한함)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43407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4-23

더파크힐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63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11층 공동주택

지1층 29.58㎡

지1층 12.93㎡

1층 90.1㎡

1층 12.93㎡

2층 200.53㎡

3층 200.53㎡

4층 200.53㎡

5층 200.53㎡

6층 200.53㎡

7층 198.39㎡

8층 140.84㎡

9층 140.84㎡

10층 140.84㎡

11층 137.56㎡

옥탑1층 11.47㎡ (연면적 제외)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6층 602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59.87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4-23

813.9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813.9분의 29.85

감정평가액

350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3.18

350,000,000

35,000,000

2회

2026.04.29

245,000,000

24,500,000

3회

2026.06.10

171,500,000

17,150,000

4회

2026.07.15

120,050,000

12,005,000

